사 업 명

(19) 조기재취업수당(1280-351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고용보험기금	고용노동부	고용서비스정책관		080	08D
명칭	고중모임기급	工名工名子	工名/1月二/8年代		사회복지	고용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200	1280	351
명칭	고용안전망확충	실업급여	조기재취업수당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\bigcirc						

3. 지출계획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	2023년 계획		2024년		증감	
71 में ठ	결산	당초(A)	수정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조기재취업수당	468,018	386,659	470,260	482,872	463,837	77,178	20.0

4. 사업목적

-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등을 지급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조기 재취업 촉진
 - ▲(조기재취업수당)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/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잔여 소정급여의 1/2 지급
 - * 만 65세 이상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/2 이상을 남기고,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/2 지급
 - ▲(직업능력개발수당)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참여기간에 1일 7,530원 지급
 - ▲(광역구직활동비)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 지급
 - ▲ (이주비)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비 등 지급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: 고용보험법 제64조부터 제69조

고용보험법 제64조(조기재취업 수당)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(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)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.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 ④조기재취업 수당을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(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)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지급한 것으로 본다.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고용보험법 제65조(직업능력개발 수당) ①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.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③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지급 요건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인력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고용보험법 제66조(광역 구직활동비) ①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. ②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,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고용보험법 제67조(이주비) ①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.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, 그 금액의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

- ② 추진경위 '92.3월 한국노동연구원에 「고용보험연구기획단」발족
 - '93.4월 「고용보험실무작업반」구성 및 '95년 시행방침 확정
 - '93.12월 고용보험법 제정·공포
 - '95.7월 고용보험사업(실업급여 등) 시행 이후 '96년부터 지급

6. 주요내용

- ① 사업규모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1995. 7. 1. ~ 계속
-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(예산액기준,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)

연도	2020	2021	2022	2023	2024
사업비	337,779	465,097	524,934	470,260	463,837

- 기타: 해당없음

② 사업추진체계
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- 사업시행주체 : 고용노동부(고용센터)

- 사업 수혜자 : 구직급여 수혜자
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1. 조기재취업수당						
조기재취업수당	당 신청서 제출	고용보험법 제64조 (조기재취업 수당)	수급자 → 고용센터			
			1			
지급요	건 확인	고용보험법 제64조 (조기재취업 수당)	고용센터 → 수급자			
조기재취임	법수당 지급	고용보험법 제75조 (조기재취업 수당)	고용센터 → 수급자			
2. 직업능력개발수당, 광역구직활동비, 이주비						
		고용보험법 제65조~제67조				
수당 신청	!서 제출	(직업능력개발 수당,	수급자 → 고용센터			
		광역 구직활동비, 이주비)				
지급요건 확인 (서류심사, 심의위원회 등 개최)		고용보험법 제65조~제67조				
		(직업능력개발 수당,	고용센터 → 수급자			
		광역 구직활동비, 이주비)				
		고용보험법 제65조~제67조				
수당 지급		(직업능력개발 수당,	고용센터 → 수급자			
		(7 8 9 7/11 2 7 6,	포이면되 그 무법시			

광역 구직활동비, 이주비)